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노승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노승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소영,
김태호, 봉양순, 송명화,
안광석, 유 용, 이광성,
이중환, 황규복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
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
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서울문화재단도 이를 적용
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문화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하고자 함(안 제13조제2
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19조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3개월” 을 “2개월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업무계획 등) ① (생략)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<u>3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업무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월</u> ----- -----.